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6 - 71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료 지원 조항 신설(제 12조의 2)
- 나.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 반영(제5조제2항제2호, 제7조제1항)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표기 정비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6. 7. 14. ~ 2016. 8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개선의견 일부 반영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예방정책에 관하여”를 “예방정책에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판단 되는”을 “판단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자살예방대책”을 “및 성별 자살예방대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등에 관하여”를 “등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수집”을 “성별로 수집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자살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및 상담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와 <u>예방정책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방정책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"자살위험자"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<u>판단</u> 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판단되는</u>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아동 · 청소년 · 중년층 · 노인 등 생애주기별 <u>자살예방대책</u></p>	<p>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및 성별 자살예방대책</u></p>

3. ~ 6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구성·기능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자살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<신설>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등에 -----  
-----.

7조(자살실태조사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성별로 수집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관계기관-----  
-----  
-----.

제12조의2(자살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및 상담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
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용을 정신건강검진기관에 지원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정신건강검진 지원료 예상비용은 연평균 12,000천원으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- 정신건강검진 지원료(1인) : 5만원 × 240명 = 12,000천원(시비 100%)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의약과 이단비
연 락 처	02-3153-9043